

 루리 위키 > 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국민연금 장애연금 받는 조건: 등급·납부 요건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국민연금 장애연금 받는 조건: 등급·납부 요건·청구 절차 정리

루리

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(또는 가입했던 사람)에 생긴 질병·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급여예요. 초진일 요건과 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, 등급은 1~4급이에요.

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(또는 가입했던 사람)에 생긴 질병·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급여예요. 초진일 요건과 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, 등급은 1~4급이에요.

국민연금법 제67~70조(국가법령정보센터)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를 2026-10-28에 확인해 정리했어요.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고, 실제 판정은 공단 장애심사가 해요.

1 1. 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

구분	내용
초진일 요건	장애 원인이 된 질병·부상의 초진일이 만 18세 이후이고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있어야 해요
납부 요건 ①	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
납부 요건 ②	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(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)
납부 요건 ③	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

- 납부 요건은 ①~③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.
- **초진일**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·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에요.
- 초진일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, 국외이주·국적상실 기간에 있거나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.

2 2. 장애 정도를 정하는 날(장애결정 기준일)

-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완치되면 완치일이에요.
-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에요.
- 그때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악화된 경우에는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요 (노령연금 지급연령 전 청구에 한해요).

3 3. 등급과 급여 수준

등급	급여 수준
1급	기본연금액의 100% + 부양가족연금액
2급	기본연금액의 80% + 부양가족연금액
3급	기본연금액의 60% + 부양가족연금액
4급	기본연금액의 225%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

-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금액은 적지 않아요. 예상 금액은 공단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- 4급은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일시보상금이에요.

4 4. 청구 절차

-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해요. 장애 분류별로 서류가 달라요.
- 의사에게 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」(필요하면 소견서)를 받아요.
-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와 서류를 내요.
- 공단이 장애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요.

청구인: 원칙은 본인이에요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, 해외체류 등 부득이하면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.

구비서류(공단 안내 기준)

- 장애연금 지급청구서, 신분증(제시로 갈음 가능)
-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
-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
- 장애발생 경위 신고서, 통장 사본(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)
- 진료기록지, 영상자료(X-ray, CT, MRI 등)
-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
- 최초 진료기관과 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르면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

5 5. 혼한 실수

- 초진일을 진단서 발급일로 착각해요. 처음 진찰받은 날이 기준이에요.
- 납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 포기해요. ①~③ 중 하나면 돼요.
- 청구 기한을 놓쳐요. 공단 안내상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. 다만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분은 지급된다고 안내돼요.
- 장애인연금(소득·재산 기준의 별도 제도)이나 장애인복지법 등록과 같은 제도로 생각해요.

6 6.가상 예시

A씨가 가입 중 질병으로 처음 진찰받은 날이 초진일이라고 해요. 그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고, 그 시점의 장애 정도가 3급이면 기본연금액의 60%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아요. 금액은 가상이라 적지 않아요.

7 체크리스트

- 초진일을 병원 기록으로 확인했다
- 납부 요건 ①②③ 중 하나를 확인했다
- 장애심사용 진단서 양식으로 발급받았다
- 청구 기한(수급권 발생 후 5년)을 확인했다
- 지사 담당자와 구비서류를 상담했다

8 용어 정리

- **초진일**: 장애 원인 질병·부상으로 처음 진찰받은 날이에요.
- **완치일**: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날이에요. 세부 기준은공단 장애심사 안내를 보세요.
- **기본연금액**: 장애연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이에요.
- **일시보상금**: 4급에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이에요.

9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국민연금법 제67~70조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연금법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연금법>)
-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:
<https://www.nps.or.kr/pnsinfo/ntpsklg/getOHAF0065M0.do?menuId=MN24001120&tab=3> (<https://www.nps.or.kr/pnsinfo/ntpsklg/getOHAF0065M0.do?menuId=MN24001120&tab=3>)
- 정부24 장애연금 지급청구 안내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5007&CappBizCD=14600000301&tp_seq= (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5007&CappBizCD=14600000301&tp_seq=)
-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용어 안내(PDF):
https://www.nps.or.kr/html/download/easy/document_006.pdf (https://www.nps.or.kr/html/download/easy/document_006.pdf)
- 문의: 국민연금공단 1355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

Facebook

💬 다른 고민 보기 · 🎯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0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